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지방경찰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무부장관은 소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하여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범위 및 난이도를 검토하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변경 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기술자격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0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제131조까지에 따른”을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제3호나목 중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유한 페인트(함유된)”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함유하는 고무 풀(함유된)”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8조제13호 및 제14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각각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함유하고”를 “포함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을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를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을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109조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처리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32. 법 제11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처리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 별표 5 제23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란 중 “상시근로자 3천명 미만”을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타목부터 하목까지의 위반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p>다.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p> <p>과. 법 제29조제2항(법 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최초로 실시할 때와 실습내용을 변경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p> |
|---|

<p>하. 법 제29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p>

별표 35 제4호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4조제2항”을 “법 제54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7조제3항”을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이. 법 제114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

별표 35 제4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5조제1항”을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1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3항”을 “법 제155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6조제1항”을 “법 제156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 2. 별표 35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10일
- 3. 별표 35 제4호(라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0월 1일
- 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6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 및 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호 규정의 위반 및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 김현미

●대통령령 제3100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33조제1항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로, “공급하여야”를 “공급해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공급하여야”를 “공급해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